[서식 예]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



항 고 장

항 고 취 지

피고인 ○○○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. ○○지방법원(형사 ○○부)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.

항 고 이 유

원 결정은 항고인의 기피신청이 아무런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 불철저에서 오는 사실판단의 잘못이라 하겠습니다. 즉 이 건 기피신청의 이유인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는 것임에도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이유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.

따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근거로 한 원결정의 사실판단은 전혀 진실을 외면한 결론이라 하겠으므로, 이와 같이 부당한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항고에 이르렀습니다.



2000. 0. 0.

위 항고인 〇 〇 〇 (인)

			OK K	대한법률구조공단	
제출법원	원심법원	제출기간	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 왕		
	(형사소송법 406조)		터 3일내		
	• 검사				
신청권자	·피고인				
	· 변호인(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)				
제출부수	항고장 1부	코 커 버 그	형사소송법 18~23조		
	87317	- 선언함॥ 	る小工を目 10°20工		
불복절차	불복절차 · 재항고(형사소송법 415, 419조) 및 기간 ·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내(형사소송법 405조)				
7 1					
사 유	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				
	헌법, 법률,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				
	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음				